

의안번호	제2584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자	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3. 3. 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두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4
----------	------

발의연월일: 2023. 3. 3.

발의자: 최두임 의원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김희태, 이정숙 의원(6인)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 제2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규정한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상세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2022. 12. 20.)』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수정(안 제2조제4호)
 -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협의체의 요청을 받는 경우를 규정
-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에 대한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5호
 - 입법예고 기간: 2023. 3. 3.(금) ~ 2023. 3. 10.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앙정부, 고성군수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고성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u></p> <p>5.·6. (생략)</p> <p>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 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중앙정부, 고성군수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u></p> <p>5.·6.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단서 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회의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행정안전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